

2016

연구윤리 워크숍 및 편집관련 회의

**위기관리이론과실천
연구윤리 워크숍 및 편집관련 자료**

- ◆ 일 시: 2016년 4월 30일(토) 13:00-15:00
- ◆ 장 소: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자료 1〉 위기관리이론과실천 연구윤리워크숍

1-1 위기관리이론과실천 연구윤리규정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8.09.01.

제1차 개정 2013. 2. 21.

제2차 개정 2015. 1. 01.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를 진흥하고 관련 학문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의 협력적 연구 공동체 구축을 통해 위기관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공동체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윤리성)

①연구자는 연구 윤리성을 확보해야 하고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연구자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을 행한데 대해서는 연구윤리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일체의 판단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모든 임원 및 회원, 그리고 심사자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구성)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정책이사 중 1인씩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④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의 윤리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연구 결과의 진실성 확립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규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6. 논문유사도검사 시스템 기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개최)

-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사항 발생 시 또는 이와 관련된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의결) 위원회 의결은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권한과 책무)

①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활동

제9조(제보의 접수)

①연구윤리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제보는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임원에게 실명으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보해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인 경우에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제목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없는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 제출)

①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요구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조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4 장 후속조치

제12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거나 인지,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③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론과 실천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제13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후속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로 확인·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

1. 조사결과 및 견책 서한의 발송
2. 연구부정행위 논문의 게재 불허
3. 이미 게재된 논문은 논문 목록에서 삭제
4. 게재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5.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6.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7. 3년간의 투고 및 심사자격의 정지

8. 기타 연구윤리 확립에 필요한 조치

②제①항 제4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하는 것을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재조사)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3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무혐의로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교육자료

〈연구윤리 실무매뉴얼〉

연구윤리 자체점검표

KIEP 보고서 연구윤리 자체점검표				
연구보고서명		점검일자		
연구진 성명	(서명)	참여 구분	책임	공동
소속 기관	(외부인사만 기록)	직위	(외부인사만 기록)	
구분	연번	연구윤리 내용	준수	미준수
위조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기록하지 않았음.		
변조	2	연구 자료, 기기,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지 않았음.		
표절	3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 번역 인용에 대한 출처를 적절하게 표기하였음.		
	4	인용한 부분을 정확하게 출처표기 함으로써, 포괄적/개괄적, 부분적/한정적 출처 표기에 해당되지 않음.		
	5	재인용(2차문헌 인용) 사실을 정확하게 밝혔음.		
	6	인용된 부분의 질(質)과 양(量)이 장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물과 피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지 않음.		

RCE 2015 제2차

연구윤리포럼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중복게재의 제 문제

중앙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심리학과 현명호

RCE 2015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2015.09.17.

1. 위조
2. 변조
3. 표절
4. 부당한 저자 표시
- 5. 부당한 중복게재**
6. 연구 부정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 부당한 중복게재



“ 부당한 중복게재 ”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3. 과거의 학회 예

이전 심리학회의 경우

- ▶▶ 국내논문 ➡ 외국어로 번역 투고 가능
(편집위원회 동의 필요)
- ▶▶ 우수한 결과를 외국에 알린다는 의미
- ▶▶ **But** 외국어 논문 ➡ 국내 학술지 게재 불허

4. 중복게재 사례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함

1. 단순 중복게재의 경우
2. 아이디어의 변화 없이 재생산한 경우
 - 연구주제, 방법론 등
 - 신문 등 저널에 투고한 에세이의 작품집 출간
일부는 새로운 작품, 인용 표기함
 - 표절과는 다른 문제

4. 중복게재 사례(계속)

유사 주제의 반복 검증

- 대상자의 변경: 같은 논리, 같은 가설, 같은 방법, 같은 결론

5. 부당저자 표기와 함께 발생한 사례(1)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건 (2013.9)

표절 논문 또 표절...중앙대 교수 2명 징계 착수

교수가 자기 논문을 표절해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고, 이 논문을 다른 교수가 표절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대학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박 모 교수가 지난 2010년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영문 논문을 같은해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같은 학부 이모 교수가 박 교수가 쓴 해당 논문을 국문으로 그대로 번역해 올해 대한경영학회지에 실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대는 최근 연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표절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두 교수에 대해 해임 등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부당저자 표기와 함께 발생한 사례(2)

▶▶ 대학원생 논문 건 (2007.12.)

1. 학회발표 (Proceeding)
2. 중앙우수논문제 재응모 : 저자 일부 변경



6. 자료의 중복사용

심리학회 현재 진행사건

▶▶ 1회에 걸친 자료조사

▶▶ 자료를 나누어 중복투고



투고는 게재가 아닌가?

REF 2015

7. Abstract 와 Proceeding

한국형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K-MBSR) 프로그램이 전두엽-집행기능 및 기억수행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K-MBSR program on frontal-executive function and memory.

김영아 (kyeong@naver.com)
김교현 (kimj@chju.ac.kr)

목 마음챙김명상을 하는 사람은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무의미 자기조절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주의집중과 관련된 기억과행동에서 향상을 보인다. 또한 마음챙김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인지적 수행에서 개인을 보인다. 특히 주의지속능력, 시간 간격 정보처리능력, 집행기능 등이 인지과정에서 향상을 보인다는 목이 연구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마음챙김명상 훈련이 집중력 집행기능과 기억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지원자는 마음챙김명상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들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중력집행기능의 측정은 Kimc. 컴퓨터집행기능검사 중 2X7 및 스트로파사, 단어유형성, 오답유형성, 인출유형성 4개 소문자를 사용하였고, 기억수행의 측정은 언어기억검사(사) 시각기억검사로 구성된 Rey-Kim 기억검사를 사용하였다. 참여자들 중 한두명집행기능 점 간섭적능력(2.52, p<.05), 단어유형성(2.44, p<.001), 기억수행 점 시각기억(4.42, p<.001), 시각지연(4.52, p<.001), 학습가용(4.60,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챙김 명상의 학제적 통계능력, 시각적 유창성, 시각적 기억력 향상에 특히 집행적 무의미 조절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음챙김이 집행적 무의미 조절 과정에 촉진적 역할할 것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후 학회지에
출간하여 논문 인정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The Moderating Effects of Forg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al Ideation

최희원, 유현호 (yehunho@knu.ac.kr), yehunho@knu.ac.kr
김태우 (taewoo.kim@knu.ac.kr)

목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용서로 조절하고, 용서요인이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용서는 자기 용서와 타인에 대한 용서로 구분되어 연구되었다. 연구 결과는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용서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용서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배경
아동학대에 받은 피해자를 포함한 성인이 피해 아동의 건강, 직업을 재기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지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격적 또는 가족생활 및 사회적 요구를 위해서 연구하는 용서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McCullough, 2006). 관련 연구에서 아동기에 경험한 신체적 학대나 성폭행이 개인과 정상인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으므로,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용서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용서 노력하는 내적인 변화라고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서 세 가지 형태(자기 용서, 타인에 대한 용서, 타인에 대한 용서)를 연구하고, 용서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용서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용서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용서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용서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
남녀 대학생 233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아동기 학대 설문지(C-CTQ), 자살생각 척도(SIQ), Heartbeat 용서 척도(HPF)를 실시하였다. 아동기 학대 경험과 용서, 자살생각, 성취와 타인 간 갈등 고 집단과 저 집단으로 분류하여 서열판 분석을 실시하였다.

REF 2015

RE 2015
제 2차

연구윤리 포럼

<토론>

연구윤리 평가에 고려해야 할 사안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1. 총론적 고려사항

- 연구윤리는 규범 준수 이상의 시너지효과 유발
 - ✓ 소극적 의미 : 정직성, 신뢰성, 객관성, 내재적 완결성 확보
 - ✓ 적극적 의미 : 효율성, 창의성, 책임성, 대외적 융복합성 제고
- 법적 기반이 아닌 윤리적 기반 :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과 구분
 - ✓ 중복게재(자기표절)의 합법적 非윤리성
- 사실관계(실제성)뿐만 아니라 독창성과 부가가치 창출의 문제
 - ✓ 主從關係와 主客顛倒의 쟁점
- 사후 평가의 문제보다는 연구 문화 혁신의 문제
 - ✓ 의도적인 윤리규정 준수 vs 非의도적인 윤리규정 위반
 - ✓ 의식과 태도 및 문화 변화를 유도

2. 표절 논란의 민감한 이슈와 예시

- 독창성이 없거나 미약한 타인 저작물 활용의 경우
 - ✓ 독창성 판단 범위의 문제
 - ✓ 타인 저작물 활용 범위의 문제
- '일반적 지식'이나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활용의 경우
 - ✓ 판단 범위의 문제
 - ✓ 서술(표현) 방식의 문제: 일반적 지식이라면 동일한 방식으로(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하는가? 혹은 주관적으로 표현해야 하는가?
- 출처표기가 없는 내용 재구성 또는 표현 방식 변경
 - ✓ 동일성 vs 유사성의 문제

<예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상품의 관세 철폐는 물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도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여 2015년 현재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2개 국가들이 협정에 합의했다.

RE 2015

3. 중복게재의 민감한 이슈

- 출처표기를 할 경우 허용 가능한 “적절한” 범위는?
 - ✓ 표절의 경우와 동일한 또는 차별적 기준 적용 여부
 - ✓ 자신의 여러 개 선행 저작물을 각각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재구성하거나 편집할 경우
- 동일한 아이디어에 대한 유사한 표현 방식의 경우 출처표기의 범위
 - ✓ 자신의 선행 저작물(들)과 연계성이 높을 경우
 - ✓ 유사한 연구 실적물이 누적된 경우
- Family형 일련의 연구결과에 대한 판단
 - ✓ 연구 대상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방법론과 자료 활용, 논리 구조 및 결론적 시사점의 경우
 - ✓ <예시> 동일한 세계은행 패널자료를 활용하고 동일한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 대한 각각 유사한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도출
- 보론적인 논의 또는 추가 정보 제시의 경우
 - ✓ 각주, 부록이나 부표 활용

RE 2015

4. 연구윤리 제고를 위한 제안

- 한국연구재단 등록 학술지 대상 무작위 표본 선정하여 실태 조사 분석 필요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부 훈령을 기반으로 실제적인 연구윤리 가이드 제시 필요
- 타성적인 연구 관행의 개선 프로그램 운영
- 대학원 과정에서 교수/대학원생 간 연구윤리 준수 교육 강화
- 부당한 저자표기에 대한 논의도 병행 필요
- 연구활동 위축이나 비효율적인 형식 논리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非의도적인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자율적인 訂正 기회 부여 절차 포용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중복게재의 제 문제

이민호

한국연구재단 책임연구원

- 교육부는 2015년 11월 03일자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교육부 훈령 제153호)하였다. 기존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60호, 2014.3.24.)」을 보다 구체시킴으로써, 동 지침이 연구현장에서 연구부정행위 판단 등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방향이고 목표였다. 교육부는 1년여의 개정 작업기간을 통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포럼 등을 통하여 각 학문분야별 연구자 및 실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코자 노력하였다.
- 금번에 개정·발표된 「연구윤리를 확보를 위한 지침(2015.11.03.)」의 주요 개정의 핵심 내용 중에, 연구부정행위 범주에 “중복게재”가 “부당한 중복게재”의 용어로 새로이 포함되었다(동 지침 제12조제1항제5호).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그 동안 정부와 학계의 노력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부정행위로 정의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인 전형적 표절 외에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로 출판하거나 선행 저작물의 출판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인 중복게재를 연구자로서 삼가야할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부적절행위(research misbehavior)로 주지하고 있다.
- 그럼에도 금번 교육부의 개정된 지침에서는 중복게재의 정의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유형 중에서도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한 후,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극히 제한한 ‘부당한 중복게재’만을 연구부정행위로 포함시킨 것은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과 충격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이미 연구윤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미국 NIH의 연구자 3,2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연구자가 저지르는 연구부정행위

의 발생 비율은 1% 이하이며, 의심스런 연구수행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발생한다.

- 결국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는 연구부정행위로 정의된 전형적 표절을 예방하는 것 이상으로 의심스런 연구수행, 연구부적절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노력 속에 중복게재 예방이 큰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다.
- 금번 개정을 통하여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 유형 속에 포함하여 규정으로 금지시키고 있지만, 그 외의 중복게재 유형 또한 연구자로서 삼가야 할 행위로 판단되어진다.

<표> 이차출판과 중복게재

용어	출처표시	부당이득 (double count 등)	비고
이차출판 (secondary publication)	O	X	허용
중복게재 (duplicate publication)	O	O	금지
	X	X	
중복게재 (duplicate publication) (부당한 중복게재)	X	O	

- 중복게재를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로 출판하거나 선행 저작물의 출판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실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저작물 유형(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문, 학술지 논문 등), 독자층의 동일성 정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도 등 다양한 변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비록 중복게재 여부를 사안별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전문가 집단이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지만, 논문 작성과 평가에 대한 기본 이념과 규범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논문의 가치는 학문발전의 기여이고, 학문의 발전의 기여는 학문의 누적성을 가능케 하는 논문의 독창성과 논문 작성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에 있을 것이다.
- 중복게재는 독창성 없는 논문을 이중, 삼중으로 게재함으로써 독자나 출판사를 기망하고, 해당 연구자에게 부당한 연구업적을 쌓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으로서 근절되어야 한다. 반면, 이차출판은 독자층을 달리하는

경우, 허용되는 행위로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적인 창작활동이
기 보다는 기존 논문의 보급확대, 활용성 확대로 보아야하며, 이에 따라
후속저작물에 선행저작물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고, 후속저작물에 대한
별도 업적 산정은 이루어지지 말아야할 것이다.

〈자료 2〉 위기관리이론과실천 편집관련자료

2-1 Crisonomy 편집규정

Crisonomy 편집규정

제정	2008.09.01
제1차 개정	2010.02.01
제2차 개정	2010.12.17
제3차 개정	2012.12.26
제4차 개정	2015.01.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이 발간하는 Crisonomy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편집위원의 자격, 선정기준, 임기) 편집위원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 ①전체 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한 위기관리 학문분야나 지역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 ②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 학교 또는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 ③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논집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3. 편집위원회의 소집(상/하반기) 연2회. 필요에 따라 수시적으로 소집
4.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5. 기타 논집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의 역할)

①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기고논문의 적절성 판단
2. 기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3. 기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4. 기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특별호의 발간에 관한 사항

②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③편집위원회는 Crisisonomy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의뢰 중인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 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2.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논집의 발간

제5조(기고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 방법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기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기고요령에 따른다.
2. 기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전자우편 혹은 출력물이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기고논문의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6조(발간 예정일) Crisisonomy는 연 12회 발간하며, 발간예정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제4장 심사절차 및 기준

제7조(초심)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의 초심을 의뢰한다.

1.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에게 기고논문의 적절성 판단과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논문과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통보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3. 초심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심사위원에게는 심사기한을 명시하여 의뢰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논문이 위기관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 (2) 논지가 뚜렷하고 논리전개에 무리가 없는가
 - (3) 논문이 선행연구를 충분히 참고하고 있는가
5. 논문기고 요령에 따라 취합된 논문심사의 결과를 최종판정하여,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최종원고와 파일을 요청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논문과 수정정보완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요청한다. 수정된 논문은 10일 이내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제8조(재심 및 최종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초심의 종합판정 결과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게재 판정’으로 인정하고, ‘수정후 재심사’ 이상이 둘 이상이면 ‘수정 판정’으로 재심을 하며, ‘게재불가’가 둘 이상이면 ‘불가 판정’으로 게재를 하지 못한다. 다만, ‘게재판정’의 경우에도 편집위원회는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게재를 할 수 있다.

2. 초심에서 ‘수정 판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및 보완을 한 후 수정·보완사항을 정리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투고사이트에 탑재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보완된 논문의 초심 심사위원중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용 논문을 보낸다. 재심 심사위원은 ‘게재가’와 ‘게재불가’ 판정만 할 수 있다.

제9조(확정 및 인쇄) 인쇄를 위한 최종논문의 취합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주일간의 저자교정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 받아 취합한다.

2. 저자교정을 마친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인쇄 형식 확인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제10조(게재불가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불가 사유를 명기하여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최종 판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제기) 기고자가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와 함께 논문의 재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재재심의 수용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심의회부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이전의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앞의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심사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판정 결과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심사내용의 비밀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관하여는 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기고자의 요청과 심사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3조(논문의 이월게재)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저자가 요청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4조(논문게재예정 증명 등) 논문 게재예정 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Crisisonomy가 발간된 후 논문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5조 (표절) Crisisonomy에 게재되는 논문이 타인의 창작물을 적절한 조치 없이 무단으로 복제 혹은 도용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1차 개정안은 201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2차 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3차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본 4차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Crisisonomy 편집샘플

<저자 확인사항>

1. 아래 황색 표기에 유의하십시오.
2. 한글기본틀에 편집양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작성하시되, 스타일, 캡션, 표번호 그림번호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3. 본문 내 인용, 참고문헌, 표 그림 제목과 내용과 출처 전체는 영문으로 작성하십시오.
4.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방식은 예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권 확보를 위한 고찰*

- 취약계층을 위한 받아들이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을 중심으로 -

Study for Securing the Safety Right

- Focused on the Criterion of the Acceptable Risk Level for Disadvantaged Class-

Hyun Jung Yoo** <이름 표기는 예시와 같이 이름 성 순으로 정렬합니다>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52 Naesudong-ro, Heungduk-gu, Cheongju, Korea

Abstract

In spite of the continuous developments of both economics and technology, there is not any declines of the safety concerns in daily life. Furthermore, the improvements of life standard makes advantaged as well as the concept of the criterion of the acceptable risk level to secure the safety right. <반드시 9 ~ 11줄로 작성>

Key words: safety right, disadvantaged class, criterion of the acceptable risk level

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자력재난은 테러리즘이나 자연재난에 의해서도 발생가능하기 때문에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와 <반드시 9 ~ 11줄로 작성>

주제어: 원자력발전, 원자력재난, 원자력사고, 위기관리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00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Tel. +82-43-000-0000. Fax. +82-43-4002-0000. E-mail. 0000@sehan.ac.kr <해당항목을 모두작성, 휴대전화번호표기 금지, 반드시 유선전화번호로 기재>

*** Corresponding author. Tel. +82-43-090-0001. E-mail. 0000@de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an. 6, 2015 / Revised: Feb. 17, 2015 / Accepted: Feb. 20, 2015

1. 서론

1. 보안취약성평가(Security Vulnerability Analysis: SVA)

1) 미국 CCPS의 보안취약성평가(SVA)

(1) 1단계: 공장 설비의 특징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인체 및 환경에 직접 피해를 미치므로 취급 전 과정에서 적정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상 가장 큰 위험이 원자력발전소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Hong, 2011: 101). <본문 내 인용의 경우 (성, 연도) 반드시 영문표기. 반드시 성만 기재합니다. 이름을 모두 쓰지 않도록 합니다. 2인 저자의 경우 (Lee & Cho, 2015) , 3인 이상의 경우는 (Lee, et. al., 2015) 와 같이 씁니다. >

① Statistics on Marine Casualty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variables < 제목, 내용 모두 영문으로 작성 합니다>

Variables	M	SD
Mobile Phone Dependency	16.85	5.08
Life-Goals	48.01	5.83
Social Emotional Problems	50.22	11.27

※ Sou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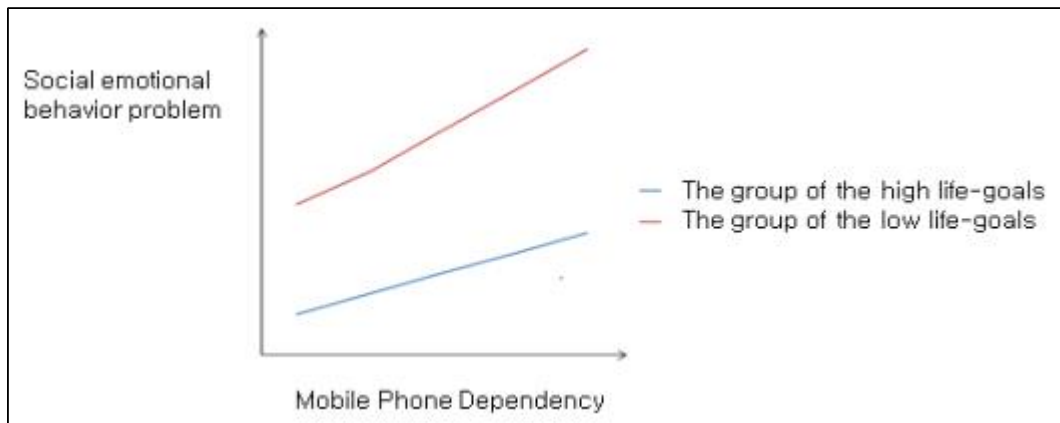


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life-goals between mobile phone dependency and social emotional problems in youth <그림 제목, 내용 모두 영문으로 작성 합니다>

1) 공장설비 특징에는 잠재적인 공격표적 자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세부 내용을 기술한 정보의 배치, 공장설비 및 주변에

References <작성방식을 아래와 같이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erto, Samuel C. 1989. *Principles of Modern Management: Functions and Systems*. 4th (ed.). MA: Allyn and Bacon, Inc.
- Edwards, Frances L. and Daniel C. Goodrich. 2007. Organizing for Emergency Management. William L. Waugh Jr. and Kathleen Tierney. eds.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2nd. ed. Wasington, D. C.: ICMA Press.
- Hankook Ilbo. 2015. 4. 6.
- Han, Ki Wook. 2014. Sewol Ferry Disaster and Project of Innovation 'Critical Society'. *The Quarterly Changbi*. 42(2): 2-9.
- Kim, Byung Sub and Jeong In Kim. 2014. Reinterpretation of Bureaucratic (Ir)responsibility: Focused on Sewol Ferry Acciden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3): 99-120.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국문 참고문헌은 영문에도 국문에도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References에 기재된 부분과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에 기재된 부분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섭, 김정인. 2014.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3): 99-120.

한국일보. 2015년 4월 6일자.

한기욱. 2014. 세월호 참사와 '임계사회' 혁신의 과제. *창작과 비평*. 42(2): 2-9.

Jae Eun Lee : He received his B.A., M.A., Ph.D. from Yonsei University, Korea in 2000. 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which he has taught since 2000.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organizational studies, and policy implementation. He has published 120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11 books, including 10 co-author books(jeunlee@chungbuk.ac.kr). <저자 소개는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3. 기타 위기관리이론과실천 편집관련 및 연구윤리 의견수렴